

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 번	안 호	600
--------	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7. 4.

제안자 : 안산시장

□ 수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(대통령령) 중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,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수정 주요골자

- 대부출장소장의 직급·직렬을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등 11개 사업소의 설치조례증 소장(또는 관장)의 직급·직렬을 규정한 부분을 삭제 정비

□ 참고사항

○ 관련법규(근거)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2조의2
- 경기도 자치 12200-1101('97. 4. 23)호 공문

○ 소요예산 : 해당없음

○ 조례안 : 별첨

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증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3조제1항중 '대부출장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되, 대부동장은 대부출장소장이 겸한다'를 '대부출장소장이 대부동장을 겸한다'로 한다.

안부칙증 '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'를 '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'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'두며,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

②안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'두며, 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

③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'두며,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

④안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'두며,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,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

⑤안산시율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'두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

⑥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'두며,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

⑦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'두며,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

⑧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'두며,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

⑨안산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'두며,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

⑩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'두며, 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

⑪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'두며,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 (소장) ①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대부출장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되, 대부출장소장은 대부동장이 겸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 (소장) ①----- ----- ----- 대부동장은 대부출장소장이 겸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3조 (소장) ①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대부출장소장이 대부동장을 겸한다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		<p>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중 '두며,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</p> <p>②안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중 '두며, 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</p> <p>③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중 '두며,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</p> <p>④안산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중 '두며,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,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</p> <p>⑤안산시울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중 '두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</p> <p>⑥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중 '두며,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</p>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		<p>⑦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중 '두며,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</p> <p>⑧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중 '두며,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</p> <p>⑨안산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중 '두며,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</p> <p>⑩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중 '두며, 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'를 '둔다'로 한다</p> <p>⑪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중 '두며,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한다'를 '둔다'로 한다.</p>